

◆ D-16. 당사의 현장내에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소속 일용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게되자, 현장으로 몰려 와서 체불된 노임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임금채권 보장기금법에 의거 청구가 가능한지 ?

-->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은 재판상도산(화의개시결정, 정리절차개시결정) 또는 사실상도산(건설업은 200인이하 해당)인정을 하도급업체관할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받은후,-->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(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으로 45세이상은 120만원, 30-45세: 100만원, 30세미만 80만원한도)을 지급받을수 있음.

체당금의 청구절차는 확인신청서, 체당금지급청구서 퇴직증명서 제출 : 개별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신청하여야), 접수→확인신청서처리대장에 등재→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·확인→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→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송부(신청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)→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함.

※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순위는

- ① '87. 11. 28일 이전에 설정된 질권, 저당권
- ② 최종 3개월분 임금과 '89. 3. 29일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8.5년 분한도, 97. 11. 이후에는 3년분의 퇴직금
-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
- ④ 질권·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
- ⑤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
- ⑥ 조세·공과금
- ⑦ 일반채권으로써 이중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법인재산만을 의미하고 개인의 경우 사업주개인의 총재산을 의미함.

또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액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,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경락되기

전에 가압류 및 압류 등의 방법으로 임금채권이 있음을 알려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.

따라서, 체불된 노임을 받기 위하여 공사미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경우

- ① 공사대금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
- ②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

-->조사

--> 체불임금내역확인원, 무공탁가압류협조전을 노동사무소에서 발급

--> 이를 첨부하여 재산 또는 공사대금미수금에 가압류

--> 본안소송

--> 확정판결

--> 배당

- ③ 체불임금내역에 사업주, 근로자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임금지급공증

--> 집행문(확정판결과 동일)

--> 압류

--> 배당의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여야 함.